

# 실내디자인 보호체계 및 현황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디자인 및 상표등록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 The Legal Protection for Interior Design and Protection Status of Interior Design

- A Comparative Study : Design Protection and Trademarks for Interior Design between ROK and U.S.A. -

**Author** 유호정 Ryu, Hojeong / 정희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박사수료  
하미경 Ha, Miyoung / 정희원,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정교수\*

**Abstract** The protection of Design is very important issues in these days. Even though Interior Design is also one of important design sections, it is relatively unprotected by form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yet creativity and innovation flourish. The needs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have been creas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eakness of the system for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proposed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themes. One is to research Acts related to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The second is to study the registered cas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s. These two theme is generated by the comparative review between ROK and U.S.A. Through these comparative results, this study propose some considerations for an effective protection for Interior Design.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the hole image of the space not a partial element. The concept needs to be protected because it is more effective way to respond the copying. Exterior for facade and Interior Design need to be registered in one registration to use the protection system actively.

**Keywords** 지식재산권,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실내디자인 보호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esign Protection Acts, Trademark Acts, Protection for Interior Desig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디자인 권리보호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삼성과 애플사의 분쟁이 기술특허의 관점이 아니라 디자인권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사실은 디자인의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하겠다.<sup>1)</sup>

실내 디자인은 중요한 디자인 분야 중 하나이며, 최근 10년간 실내 디자인은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sup>2)</sup> 다른 디자인 분야와 마찬가지로 창의성의 존중과 모방과 침해 방어가 중요한 실정이다.

실내 디자인의 경우 프랜차이즈 디자인의 도용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sup>3)</sup>, 드물기는 하지만 실내 디자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sup>4)</sup>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실내 디자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 보호체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조계에 의한

법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내 디자인 분야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실내디자인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체계를 이해하여야 하며, 실제 보호를 위해 등록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보호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실내디자인 보호에 적극적인 미국의 제도 및 현황과 비교해 봄으로서 우리나라의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 김관식, 애플사 대 삼성전자 사건에 비추어 본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 한국산업재산권 법학회논문집 제39호, 2012, p.324
- 2) Report : 2011년 기성실적을 통해 본 실내건축공사사업의 현황, ICC 실내건축공사협회 협회지 Interior Architecture, vol27 2011. 10, p.28  
“실내 건축공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2002년 실내 건축공사 계약 금액이 약 4조 2천억원에서 2011년 10조 이상이 됨으로 10년간 공사금액에 있어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 3) 성행경 기자, 서울경제, 2006.4.2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인색하다. 특히 서비스업에 그렇다. 고작 상표권과 의장등록 정도만 보호받는 정도다. IT분야는 서류 한 장만 들고 나가도 구속인데, 매뉴얼을 디자인 및 매뉴얼을 도용하더라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김서기 태창가족 사장 인터뷰
- 4) 이랜드파크에서 중소 외식업체의 인테리어와 영업방식 등을 무단 도용하여 분쟁이 발생. 안상희 기자, 조선일보, 2013.5.20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mkha@yonsei.ac.kr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 디자인 분야의 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국내의 법제에 관하여 비교·분석한다.

둘째, 실내 디자인 분야의 국내 디자인 등록 사례를 살펴보고, 미국과 국내 등록사례의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 (1) 실내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제의 비교·분석

미국과 한국에서 실내 디자인 보호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제는 미국의 상표법, 한국의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을 비교하기로 한다. 각 법제의 발전과정과 각기 법제에서 포함하는 보호범위를 비교한다. 이들 법제의 특성 중 특히 실내 디자인과 관련되어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분석한다.

<표 1> 문헌분석의 범위와 항목

분석대상 법제	항목	
	한국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미국	상표법
비교항목	1. 법제의 발전과정 2. 각기 법제의 보호범위 3. 실내 디자인 분야와 관련한 특징	

### (2) 실내 디자인 보호사례를 통한 국내/외 특징 비교

국내의 실내 디자인 보호사례는 디자인권에 등록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과 비교한다. 미국의 실내 디자인 보호사례는 본인의 선행연구<sup>5)</sup>인 미국 상표권에 등록된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였다.

## 2. 국내에서의 실내 디자인 보호

국내에서 디자인의 법적 보호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지식재산권은 보호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대상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생활향상에 기여하는 대상에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sup>6)</sup> 실내 디자인 또한 이들 권리들을 통해 일정부분의 보호는 가능하며, 이들 중 가장 보호가능성이 열려있는 디자인권과 상표권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 2.1.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실내 디자인의 보호

- 유호정, 인테리어 디자인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미국 상표등록 사례를 중심으로-, 보호법 비교분석과 디자인전문회사에서의 효과적 적용에 관한 연구, 디자인 지식저널, Vol.29 2014
- 안선우·채승진, 디자인보호법 비교분석과 디자인전문회사에서의 효과적 적용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9 No.4, 2009, p.110

### (1) 디자인 보호법의 발전

디자인은 ‘특허법’이 1946년 한국 최초로 독자적인 특허법으로 개정되면서 특허법내 ‘미장특허’로 보호되기 시작했다.<sup>7)</sup> 이후 1961년 ‘의장법’이 제정되면서 디자인 보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10여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5년에는 ‘디자인’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더불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와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표 2> 디자인보호법 발전과정

개정	내용
1946.10.15. 특허법	군정법령 제 91호, 특허법 내 ‘미장(美匠)특허’ 분야로 디자인 보호
1961.12.31. 의장법	법률 951호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디자인보호법
2005.07.01.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 7289호 ‘의장’이라는 용어가 ‘디자인’으로 변경

### (2)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보호범위

시대의 변화가 디자인의 개념을 변화시켰고 보다 넓은 범주를 디자인에 포함시킴에 따라, 디자인 보호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을 수차례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sup>8)</sup>을 확대하였다. 2001년에는 물품의 부분(화상디자인 포함)이 포함되고,<sup>9)</sup> 2004년에는 글자체가 포함되었다.<sup>10)</sup> 특허청은 디자인 보호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2010년, 2011년 개정안<sup>11)</sup>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 범위의 확대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과 같은 타 법과의 중복보호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국제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로카르노 협정<sup>12)</sup>에 가입하였고, 그 결과 디자인 보호범위에 있어 현행법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sup>13)</sup> 로카르노 분류에는 현행법에

- 안선우,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구조와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10, p.65
- 디자인 보호법, 법률 제 11962호, 제2조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 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의장법, 법률 제 6413호, 제2조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 12조를 제외하고 같다) 이하 생략.
-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 7289호, 제2조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 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 제2조 1항,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글자체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 정식명칭 :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캐릭터, 실내 디자인(interior design)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로카르노 협정에 대응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내 디자인 결과물도 보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표 3> 디자인 보호법 내 보호범위 확대과정

개정	내용
2001.02.03. 법률 제 6413호	물품, 물품의 부분(화상디자인포함) 포함
2004.12.31. 법률 제 7289호	물품, 물품의 부분, 글자체 포함

(3) 디자인 보호법에서의 실내 디자인 보호가능성

로카르노 분류에서 실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 25류와 제 32류이다. 제 25류는 건축분야로 하위분류(sub-class) 25-02는 ‘조립식 건축물’, 25-03은 ‘주택, 창고, 기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 32류는 그래픽 심벌과 로고, 표면패턴, 장식 분야이며, 하위분류 32-00는 차림새(Get-up)<sup>14)15)</sup>로 규정하고 있다. 차림새 중에는 실내 디자인 차림새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가 포함되어 있는 데, 이 분류를 통해 건물의 인테리어, 영업점의 내·외부 인테리어 및 외관 분위기(appearance)를 보호할 수 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sup>16)</sup> 유체동산이 될 수 없는 건축 결과물과 건물의 내부인 실내 디자인 결과물은 보호범위로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로카르노 25-03(주택, 창고, 기타 건축물)분류에 대응하는 분류가 없다. 그러나 부동산일지라도 다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호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로카르노 분류 25-02(조립식 건축물)는 보호되고 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의 디자인 분류를 살펴보면 여러 공간적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실내 디자인 차림새(get-up 및 appearance)를 보호할 수 있는 전용 분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벌 물품 디자인 제도<sup>17)</sup>,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제도,<sup>18)</sup> 부분 디자인 제도<sup>19)</sup> 등을

- 13) 로카르노 분류는 행정적인 특징만을 가지며, 계약국으로 하여금 산업디자인에 부여되는 보호의 속성과 범위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로카르노 협정 제 2조 (1) Subject to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is Agreement,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hall be solely of an administrative character. 중간 생략.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hall not bind the countries of the Special Union 이하 생략.
- 14) get-up을 대체할 적당한 용어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get-up의 사전적 의미인 “어떠한 대상의 차림새” 중 “차림새”로 바꾸어 쓰기로 한다.
- 15)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특허청, 2011, pp.11-12 로카르노 분류에서 차림새는 미국식 표현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유럽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 16) 디자인 심사기준, 제2조, 특허청 예규 제69호, 2013.1.1
- 17) 상 관습상 한 벌로 판매되고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18) 기본적으로 1디자인 1출원이 원칙이나 디자인 무심사 등록 출원에 한하여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한 제도

활용하면 실내 디자인의 보호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매우 모호한 분류에서 출원된 사례가 발견된다.

<표 4> 로카르노 분류와 국내법의 디자인분류

로카르노 분류		디자인 분류	
25-02	Prefabricated or pre-assembled building parts	L3	조립가옥, 옥외장비품
25-03	Houses, garages and other buildings		해당사항 없음
32-00	Get-up[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		해당사항 없음

2.2. 상표법에 의한 실내 디자인의 보호

(1) 상표법의 발전

상표에 관련된 법은 1908년 일본의 상표법이 그래픽도 수용되도록 하였던 상표령(칙령 제 198호)이 처음이었으며,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독자적인 상표관련 법은 1949년 제정·공포된 법률 제71호이다. 이후 1961년 “특허법”을 각각의 보호내용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으로 개별화시키고 1963년 “상표법”도 개정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산업재산권 4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sup>20)</sup>

(2) 상표법에 의한 보호범위

상표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가 필요에 따라 확대 변화해 왔다<표 5> 2011년 12월 제31차 개정<sup>21)</sup>을 통해 과거와는 달리 비전통적인 상표(청각, 후각, 서비스)도 대상에 포함됨으로서 상표법 아래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표 5> 상표법 내 보호범위 확대과정

개정	내용
1949.11.28. 개정법률 제 71호	전통적인 기호·문자·도형과의 결합 물품 대상
1995.12.29. 개정법률 제 5083호	기호, 문자, 도형과의 결합을 전제로 색채를 포함
1997.08.22. 개정법률 제 5355호	입체적 형상 포함
2007.01.03. 개정법률 제 8190호	색채와 홀로그램 독립상표 등록가능
2011.12.02. 개정법률 제11113호	1)시각뿐 아니라 청각, 후각에 의한 것이라도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포함대상 2) 서비스에 대한 사용의 규정을 신설

(3) 상표법에서의 실내 디자인 보호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법상 보호범위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모든 것까지 범위가 확장되어 있으므로 실내 디자인도 법률적으로는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실내 디자인과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에서 가장 가까운 상표가 입체상표, 색채상표, 그리고 위치상표이다.

입체상표는 구성요소 중 입체적 형상이 포함된 상표를

- 19) 물품의 부분(예: 벽면의 일부, 커피잔의 손잡이부)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20) 구자광, 상표의 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 비전통적인 상표의 보호가능성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2004, pp.8-9
- 21)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후 최초의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말하며 문자, 기호, 도형을 입체적으로 표시하거나 상품이나 혹은 상품의 포장 자체를 입체적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sup>22)</sup>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입체적인 성격을 지닌 실내 디자인이 등록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표이다. 색채 상표의 경우도 과거에는 물품과의 결합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는 물품과 관계없는 색채만의 조합으로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위치상표(position mark)란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으로 정의<sup>23)</sup>되며 특별한 위치에 특정 색상이나 형태의 디자인을 배치하는 실내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sup>24)</sup>

실내 디자인이 상표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sup>25)</sup>하고 있다. 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실내 디자인 결과물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등록 자체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브랜드를 가진 공간이어도 소비자로서 하여금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지 못한다면 등록이 어렵다.<sup>26)</sup> 이는 라이프 싸이클이 비교적 짧은 신규한 디자인이 독창성을 보호받고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타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데에는 유용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 3. 미국에서의 실내 디자인 보호

미국에서는 실내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개념을 중심으로 실내디자인 결과물이 나타내는 전체적 느낌(look and feel)을 보호해 왔다.<sup>27)</sup>

#### 3.1. 트레이드 드레스의 개념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 주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22) 박기철, op. cit., p.23

23) 대법원 2012.12.20. 선고 2010후 2339 판결에서 위치상표의 개념을 정의

24) 예를 들어 디자인의 매뉴얼을 가져 항상 같은 크기와 디자인이 나타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주유소의 경우 등록의 가능성을 보인다.

25) 상표법 제 51조 2항의 2(법률 제11962호, 2013.7.30)

26) 예를 들어, 건설사의 브랜드를 통해 출시된 아파트 디자인일지라도 신규하게 시장에 등장하여 아직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를 갖지 못했다면 등록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William F. Gaske, Trade Dress Protection : Inherent Distinctiveness as an Alternative to Secondary Meaning, Fordham Law Review, Vol.57 1989, p.1123

외형(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을 의미한다.<sup>28)</sup>

트레이드 드레스는 초기에 물건의 포장, 용기, 라벨 등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그것이 발전되어 현재는 소리, 냄새, 질감, 판매기법과 같은 비전형적인 상표를 보호하기에 이르렀다.<sup>29)</sup> 트레이드 드레스는 연방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Trademark)로 등록될 수 있다.<sup>30)</sup>

#### 3.2. 상표법에 의한 실내 디자인 보호

##### (1) 상표법의 발전

1946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상표법(Lanham Act)에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규정이 없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1976년 제 8회 순회항소법원 TESCO 판결을 계기로 상표법으로 보호되기 시작하였고, 여러 번의 판결을 거치면서 개념이 정착되어 왔다.<sup>31)</sup> 등록이 완료된 트레이드 드레스를 포함한 상표는 연방상표법 32조의 보호를 받게 되며, 등록되지 않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는 연방상표법 43조(a)의 보호를 받게된다.<sup>32)</sup>

##### (2) 상표법에 의한 보호범위

미국의 경우 상표가 될 수 있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광범위한 범주가 보호되어 왔다. 예를 들면 책 혹은 잡지의 표지, 곰 인형의 외관, 옛 자동차의 모양, 스포츠운동화의 외관, 접는 탁자의 조합, 욕실의 외관(appearance of a bathroom scale), 레스토랑의 메뉴와 외관(menu and style of a restaurant)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주의 확대가 실내 디자인 분야의 결과물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3) 상표법에서의 실내 디자인 보호현황<sup>33)</sup>

실내 디자인과 관련된 미국 상표(Trademark)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상표 분류(DC)<sup>34)</sup> 중 0705<sup>35)</sup> 아래 등록되고 있으며, 상표 표기방식(Marking Drawing Code) 중 2 또는 3 아래 등록된다.<sup>36)</sup>

미국 상표법에서 실내 디자인의 보호되는 주요한 특징은 요소들이 분리되거나 개별적으로 분석되지 않으며 전체로서 분석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전체 디자인으로서의

28) 김한주,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중소기업과 법, 제 4권 2호, 2013, p.137

29) William F. Gaske, op. cit., p.1123

30) Naomi Straus, Trade Dress Protection for Cuisine, UCLA Law review, 2012, p.196

31) 김한주,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중소기업과 법, 제 4권 2호, 2013, p.137

32) Ibid., p.139

33) 유효정, op. cit.,

34) Trademark Category, 29개의 분류가 존재

35) Category 07 : Dwellings, buildings, monuments, stadiums, fountains, structural works and building materials

하부 세부항목 중 05 : interiors and interior parts of dwellings of buildings

36) Mark Drawing Code 2 : 상표에 그림디자인만이 포함된 경우  
Mark Drawing Code 3 : 상표에 그림디자인과 글자 혹은 숫자가 함께 포함된 경우

<표 6> 실내 디자인에 관련된 국내외 지식재산권 비교

	한국		미국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상표법
보호목적	• 디자인 창작의 장려	• 사용자와 수요자의 보호	• 부당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침해 규제
보호범위	현재	• 물품, 물품의 부분, 글자체 포함 • 로카르노 분류 포함을 추진중	•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색채의 결합, 질감, 도형, 설계, 판매기법, 서비스 등 • 특별한 제한 없음
	실내 디자인 포함 법적근거	• 실내 디자인이 보호범주에 포함될 법적근거가 아직은 없음	• 시각화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보호범주에 들어가므로 포함가능
트레이드 드레스	• 개념을 정의한 법적근거 없음	• 개념을 정의한 법적 근거 없음	• 연방상표법 제 32조를 통해 정립발전
실내 디자인의 보호가능성	• 현재 조립식 건축물이 등록 가능 • 부동산(주택, 창고, 기타 건축물) 보호불가 • 전체적인 외관 통합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분류가 없음	• 입체상표, 색채상표, 위치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 보호 • 실내 디자인의 특성과 등록기준이 충돌	• 상표 분류 0705에 실내 디자인 분류가 존재 • 등록 및 권리보호의 기준을 정립 발전시킴

특징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7)</sup>

최근 10년간의 등록률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내 디자인은 주로 부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등록되었다. 상표유형으로는 서비스 마크(service mark)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레스토랑/바/커피숍/판매점/소매점에 관련한 공간디자인의 등록률이 높았다.

공간 디자인 전체를 하나의 상표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을 통한 이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의 획득이 등록을 위한 중요 요건이다. 등록을 위한 제출형식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

## 4. 국내의 실내 디자인 보호경향

### 4.1. 분석방법

실내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 사례 조사를 위해서 한국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sup>38)</sup>를 사용하여 검색<sup>39)</sup>하였다. 검색일자는 2014년 1월 24일이다. 1995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출원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 (1) 디자인권 분석대상의 선정 및 방법

검색의 대상을 실내 디자인 결과물로 한정하기 위해 디자인 분류(DC)<sup>40)</sup> 섹션 D(주택설비용품)군과 L(토목건축용품)군 중 아래의 5개 분류를 검색하였다.<표 7> 출원사례 중 최종 거절 처리되거나 무효, 취하 및 포기한

사례는 제외한다.

<표 7> 검색기준

섹션	하부 디자인 분류
D 주택설비용품	D2 일반주택 및 사무소, 공공시설 등에서 이용되는 주요 대형의 가구를 분류
	D5 싱크대, 가스대 등 주방설비용품 및 변기, 욕조, 세면대 등의 위생설비용품을 분류
L 토목건축용품	L3 시설물, 조립가옥과 구성체, 문짝, 담장, 울타리 등의 옥외 조작용과 옥외설비구를 분류
	L5 출입구, 창 및 통풍구 등 개구부를 구성하는 물품을 분류
	L6 건축물의 구성에 관한 부재 중 내장, 및 외장에 사용되는 물품을 분류

5개 분류 중 분류 항목에서 실내디자인 관련 사례들이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0개 분류항목<sup>41)</sup>을 실제 검색하여 분석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사례들이 있는 11개 항목을 재선정하였다.

<표 8> 분석사례 포함여부

검색결과 사례		
		
제외(가구디자인) D200, 독립된 가구	제외(환경디자인) L324, 독립기구체	포함(실내디자인) L3200, 전시벽체

검색결과 총 12,057건이 검색되었으나, 이들 사례를 모두 열어 실제 사례를 확인한 후 사례분석에 적합한 231건<sup>42)</sup>을 분석에 사용하였다.<표 8>

#### (2)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디자인 사례분석 내용은 출원일, 디자인 분류, 물품의

37) William F. Gaske, op. cit., p.1123

“The elements of the product’s appearance must not be isolated and examined individually, but must be considered as a whole.”

38)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39) 검색유형으로는 유사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상태가 거절되거나 무효, 취하 및 포기된 경우는 제외하고 공개 및 등록된 상태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한다.

40) 디자인 분류는 총 13개 군으로 분류된다. A 제조식품 및 기호품, B 의복 및 신변품, C 생활용품, D 주택설비용품, E 취미오락용품 및 운동경기용품, F 사무용품 및 판매용품, G 운반 또는 운반기계, H 전기전자기계기구 및 통신기계기구, J 일반기계기구, K 산업용 기계기구, L 토목건축용품, M 기타의 기초제품, N 타군에 속하지 않는 기타 물품 및 글자류, S 화상디자인

41) D200, D2138A, D2517, D262, D2910, D510, D527, D560, L30, L310, L311, L312, L3200, L3201, L321, L3220, L324, L325, L341, L342, L344, L350, L3630, L5010, L50115, L50122, L610, L6130, L620, L621

예) L341은 베란다, 발코니 항목이지만 실제 분석에 적합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42) 가구와 관련하여서는 전체적인 벽면의 디자인을 대체하는 경우와 한 벌의 가구를 통한 배치를 보여주는 경우는 포함하도록 하고, 단품의 가구, 가구의 부품 및 일부의 출원은 제외한다. 교량 및 대형건축물, 아파트 및 재래시장에 사용되는 문주 등도 분석사례에서 제외한다. 외부공간에 사용되는 캐노피 및 파고라도 분석사례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종류, 등록형태유형, 공간의 유형을 포함하였다.<표 2>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조사내용

분	내용
일반사항	출원일, 디자인 분류
등록사례경향	물품의 종류 : 벽체, 독립건조물, 오픈 구조물, 트레이드 드레스
	등록형태의 유형 : 평면, 입체 공간 유형 : 주거공간, 상업공간, 교육 및 전시공간, 공공 공간, 사무공간

## 4.2. 디자인권 사례분석 결과

### (1) 디자인 분류별 등록 경향

디자인 분류별 등록경향을 살펴보면,<표 10> D2(일반주택 및 사무소, 공공시설 등에서 이용되는 주로 대형의 가구)가 90건(36.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L3(시설물, 조립가옥과 구성체, 문짝, 담장, 울타리 등의 옥외 조작용물과 옥외설비)가 54건(23.4), L6(건축물의 구성에 관한 부재 중 내장, 및 외장에 사용되는 물품을 분류)이 38건(16.5), L5(출입구, 창 및 통풍구 등 개구부를 구성하는 물품)가 27건(11.7), D5(싱크대, 가스대 등 주방설비용품 및 변기, 욕조, 세면대 등의 위생설비)가 22건(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디자인 분류별 등록 단위 f(%)

섹션	등록건수	단위 f(%)
D2	D200 벽면디자인 34 (14.7)	90(36.0)
	D2517 혼합벽면장 47 (20.3)	
	D262 파티션 및 칸막이 9 (3.9)	
D5	D510 한 벌의 부엌가구세트배치 1 (0.4)	22(8.8)
	D560 욕실, 조립식욕실 21 (9.1)	
L3	L311 붙박이 의자, 아파트 주출입구 4 (1.7)	54(23.4)
	L3200 조립식 부스 29 (12.6)	
	L3201 조립부스형 가구 17 (7.4)	
	L350 조립식 칸막이 4 (1.7)	
L5	L5010 건물용 칸막이, 슬라이딩 도어	27(11.7)
L6	L621 건축용 장식판	38(16.5)
계		

세부 분류별로 살펴보면 혼합벽면장의 형태로 전면 벽이 등록되는 사례(D2517)가 47건(2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축용 장식판 38건(16.5), 벽체 디자인 34건(14.7%), 조립식 부스 29건(12.6%), 건물용 칸막이 27건(11.7%), 조립식 욕실 21건(9.1%)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연도별 디자인 출원 경향

디자인 연도별 등록사례를 살펴보면, 1999년 이전에 24건(10.4%), 2004년까지 26건(11.3%), 2009년까지 78건(33.8%), 현재까지 103건(44.6%)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벽면 전체에 설치된 혼합 벽면장을 통해 등록되는 사례는 꾸준히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아파트 산업이 꾸준히 발전 지속되고 있는바, 건설사 브랜드와 관련하여 벽체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립식 욕실의 경우는 1999년 이전 등록이 많은 것(17건, 7.4%)으로 나타났다.

<표 11> 연도별 출원 단위 f(%)

섹션	- 1999	2000 - 2004	2005 - 2009	2010 - 현재
D2	D200 벽면디자인 0(0)	0(0)	21(9.1)	13(5.6)
	D2517 혼합벽면장 1(0.4)	22(9.5)	5(2.2)	19(8.2)
	D262 파티션 및 칸막이 0(0)	0(0)	4(1.7)	5(2.2)
D5	D510 한 벌의 부엌가구세트배치 0(0)	0(0)	0(0)	1(0.4)
	D560 욕실, 조립식욕실 17(7.4)	0(0)	0(0)	4(1.7)
L3	L311 붙박이 의자, 아파트 주출입구 0(0)	0(0)	4(1.7)	0(0)
	L3200 조립식 부스 1(0.4)	1(0.4)	2(0.9)	25(10.8)
	L3201 조립부스형 가구 5(2.2)	0(0)	6(2.6)	6(2.6)
	L350 조립식 칸막이 0(0)	0(0)	4(1.7)	0(0)
L5	L5010 건물용 칸막이, 슬라이딩 도어 0(0)	2(0.9)	10(4.3)	15(6.5)
L6	L621 건축용 장식판 0(0)	1(0.4)	22(9.5)	15(6.5)
계	24(10.4)	26(11.3)	78(33.8)	103(44.6)

### (3) 물품별 디자인 등록 경향

실내디자인과 관련하여 등록된 사례는 평면적 벽체디자인, 독립된 구조물의 입체디자인, 오픈된 구조물의 입체디자인, 전반적인 배치와 형상을 포함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물품별 등록경향을 살펴보면 벽체의 형태로서 한쪽 면 전체를 등록하는 사례가 83건(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벽면 전체에 가구를 설치하여 전면 가구디자인의 형태로 등록하는 사례가 60건(26%)으로 나타났다. 조립 노래방, 개인사무용 부스 및 조립식 욕실과 같이 독립된 건조물이 35건(15.2%), 벽체의 일부가 26건(11.3%), 전시부스와 같이 오픈된 구조물이 공간의 영역성을 가지는 형태가 14건(6.1%)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요소, 배치, 장식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을 보여주는 사례가 7건(3.0%), 대형 건축물이면서 내·외부의 디자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독립 건조물이 4건(1.7%), 대형 전시 부스와 같은 오픈 구조

물이 2건(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물품별 디자인 등록 단위 (%)

사례		단위 (%)
벽면의 디자인	전체	83(35.9)
	일부	26(11.3)
	가구활용	60(26.0)
독립 건조물	소형	35(15.2)
	대형	4(1.7)
오픈 구조물	소형	14(6.1)
	대형	2(0.9)
트레이드 드레스		7(3.0)
계		231(100)

(4) 공간별 디자인 등록경향

공간별로 등록된 사례를 살펴보면, 주거공간이 93건(40.4%)로 많았고, 상업공간 79건(34.3%), 전시 및 교육공간 35건(15.2%), 공공공간 21건(9.1%), 사무공간 2건(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원인은 기업출원의 경우(64.3%)가 개인 출원의 경우(35.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간, 상업공간, 전시 및 교육공간에서는 기업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공간에서는 개인출원과 기업출원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3> 공간별 등록경향

단위 (%)

공간	출원인		계
	개인 출원	기업 출원	
주거 공간	32(13.9)	61(26.5)	93(40.4)
상업 공간	30(13.0)	49(21.3)	79(34.3)
전시 및 교육공간	9(3.9)	26(11.3)	35(15.2)
공공 공간	11(4.8)	10(4.3)	21(9.1)
사무공간	0(0)	2(0.9)	2(0.9)
계	82(35.7)	148(64.3)	230(100)

(5) 출원을 위한 제출 도면 및 사진

출원을 위한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1개 이상의 도면을 이용하여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sup>43)</sup>”고 규정하고 있다. 평면디자인 도면의 경우는 평면도와 이면도로 제출되고 있고, 입체디자인도면의 경우는 모든 출원서가 사시도와 정투상도<sup>44)</sup>에 의한 6면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도면이 형태의 특이사항을 표시하지 않을지라도 보다 명확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 첨부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45)</sup> 더불어 ‘참고도’로 사용상태를 표현하는 투시도 및 컬러링 도면, 사진이 부가적으로 첨부된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도면에는 별도의 치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체적 디자인의 비례로서 디자인을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디자인 설명에 디자인의 전용에 대한 설명을 부가함으로써 디자인의 보호를 가능케 하고 있다.<sup>46)</sup>

<표 14> 입체디자인 등록을 위한 도면 및 참고도

2차원 도면			3차원 도면		
				평면도	사시도
				배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참고도				

4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2항

44)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의 6면도

45) 첨부된 사례를 보면 우측면도가 제출될 경우 좌측면도가 특정한 형태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첨부되고 있으며, 저면도 또한 특정한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지는 않는 도면이다. 실제로 사시도 없이도 6면도의 조합으로 입체를 이해할 수 있다.

46) 예를 들어 “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건물의 외부 벽면에 사용되는 벽면판이나, 완구용 인형의 집 전면으로 전용할 수 있음”이라 표시하면 스케일이 다른 물품에 전용할 수 있음.

(6)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실내디자인 등록가능성

캐노피, 소형 정자, 벤치 및 보행로 구조물 등은 실내 디자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환경디자인 결과물이므로 통계를 위한 분석 사례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사례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실내디자인 분야의 등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우를 사례를 통해 특징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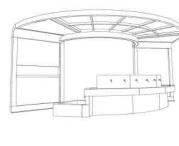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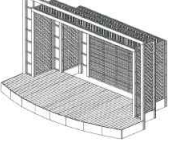

<표 15>의 파고라 등록사례는 정원, 광장, 공원, 역사 앞 등에 설치되는 것이라 출원서 디자인 설명 항목에 기재되어 있다. 독립된 제품디자인 및 환경디자인이지만 이러한 형태는 실제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벽과 천정에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흔히 발견되는 디자인이다. 전체적인 외관이미지를 포함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실내 디자인 결과물이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15> 파고라 등록사례

L311 파고라		
		
사례1	사례2	사례3

이 외 <표 16> 옥외 무대 등록사례도 뒷부분 벽면의 디자인과 함께 바닥, 천정, 공간구조물을 내용으로 등록되고 있는 바, 실내 디자인 분야도 바닥, 벽, 천정 및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중간의 구조물들을 내용으로 하여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표 16> 벽체, 천정, 바닥, 가구를 포함한 디자인등록사례

L311 그늘막이 부설된 음수대	L310 옥외무대	
		
사례1	사례2	사례3

4.3. 실내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국내 디자인 등록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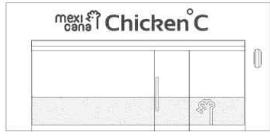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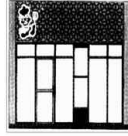
(1) 등록을 위한 적당한 분류항목 부재

실내 디자인 결과물을 등록할 수 있는 적당한 디자인 분류항목을 찾을 수 없다. 디자인 분류 항목명47)에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 건축’이 포함된 코드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이미 등록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슷한 결과물이 다른 디자인 분류항목에서 발견된다.<표 17>

47) 디자인 분류 코드 검색에 ‘건축’, ‘주택’, ‘가구’, ‘환경’등의 명칭은 여러 코드로 발견된다.

<표17>의 사례는 매장의 외부파사드이다. 사례1의 경우 ‘D200:기타의 가구’항목에서 인테리어용 벽면판으로 등록되었으며, 사례2의 경우 ‘L3200: 조립가옥등’ 항목에서 매점입구용 담장으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유사한 결과물을 검색하는 것도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매장의 외부 파사드

사례1	사례2
	
D200 인테리어 용 벽면판	L3200 매점입구용 담장

(2) 2차원 벽체 이미지로 출원하는 경향

천정, 벽, 바닥으로 이어지는 공간 전체 이미지를 출원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2차원의 벽면 혹은 벽면 전체에 부착된 가구를 통해 제품화하여 등록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18>

<표 18> 2차원 벽면화로 등록

사례1	사례2
	
벽면 판재의 형태로 등록	전면 가구로 등록

<표 19>의 경우 동일한 매장을 등록할 때 내부 디자인과 외부 파사드를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행 디자인 보호법 아래에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이 등록될 수 없으므로, 등록의 대상 물품이 중량체가 되지 않도록 판재의 형태로 등록하려니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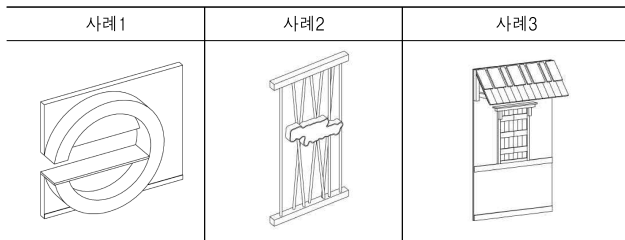
<표 19> 동일 매장의 등록

사례1	사례2
	
건물의 외부 벽면	건물의 내부 벽면

벽면의 형태를 나누어 칸막이의 형태로 등록하는 경향도 보인다.<표 20> 이것은 디자인 등록을 위한 심사기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동산이라도 공업적 생산을 통해 다량 생산이 가능하다면 등록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고려한 등록이라 판단된다.



<표 20> 벽면의 일부를 등록한 사례



## 5. 미국과 한국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실내디자인의 등록 사례 비교

### 5.1. 실내디자인 보호를 위한 분류 기준

국내에 실내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분류 기준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내 디자인이 등록된 사례를 살펴 보면 유사한 결과물이 다른 분류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상표 분류 카테고리의 07.05 카테고리에서 인테리어 혹은 인테리어의 부분(interior and interior parts)이라는 용어가 명기되어 있다.

### 5.2. 실내디자인 보호 범위

미국의 상표에서는 소리, 냄새, 색채, 소재, 특정한 판매기법과 같은 비전통적인 상표내용도 보호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실내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고, 실내디자인 요소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함께 메뉴, 서비스의 방식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 실내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주택설비용품 및 토목건축용품 분류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유체동산이며 공업적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간 전체의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부분으로 나누어져 벽면판, 한 벌의 가구, 조립식 구조체의 형식으로 등록되고 있다.

### 5.3. 등록을 위한 요건

국내에서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독창성이 중요한 요건이나 미국에서는 신규성 및 독창성과 더불어 이차적 의미의 획득(secondary meaning)을 등록요건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스토어와 같이 매우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공간의 디자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을 획득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미국의 경우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대중들에게 애플이라는 브랜드 식별력을 획득하였다는 의미에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 5.4. 디자인 특성을 고려한 보호제도 운영의 탄력성

미국의 경우 상표등록에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와 부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의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독창성 및 식별력이 다소 희박하기는 하나 상표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할 때 부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적인 내용의 보호에 있어서는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술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디자인에 있어서는 구분은 없다.

우리나라도 디자인의 짧은 사이클을 고려하여 일부 분야에 대하여는 무심사 제도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축 및 주택설비용품 분야는 해당되지 않는다.

### 5.5. 등록 서류의 특성

미국의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성을 상표의 상세설명(descriptor of mark)란에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관의 특징, 테마 및 분위기, 공간적 구성, 장식요소, 가구의 종류 및 배치, 색상, 재료, 서비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다. 함께 제출되는 도면은 상세설명을 뒷받침하는 투시도를 중심으로 도면은 필수적인 제출요건이 아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디자인 설명란에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의 재료, 쓰임의 장소, 디자인 특징<sup>48)</sup>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매우 자세한 6면의 도면과 사시도<sup>49)</sup>를 제출함으로써 도면을 통해 디자인의 상세한 보호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 5.6.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의 정착여부

미국은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을 포함한 상표가 연방상표법 제 32조(Lanham Act §32)의 보호를 받는다. 등록을 함으로서 미국 전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을 함으로서 가장 큰 혜택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트레이드 드레스가 특허상표청에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없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처럼, 그 범위가 실내 공간 전체를 다루는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내 공간 디자인 시 요소가 되는 벽, 천정, 바닥, 가구의 배치와 형태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일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포함하는 사례들이 등록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향후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의 실내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48) 연꽃 모양의 캐노피가 벤치에 연결된 형상

49) 입체의 모양을 가늠케하는 엑소노메트릭

## 6. 결론 및 제언

실내디자인의 권리보호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보호의 범위와 형태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다 창의적인 실내디자인 결과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내의 현행법으로는 실내디자인이 가구나, 조명, 재료와 같은 구성요소로서 보호되고 있으나, 실내 디자인은 이들의 결합을 통해 발생하는 미적 감성(look and feel)이므로 3차원 공간이미지와 요소들의 조합으로 평가될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실내 디자인 분야의 보호는 그 구성요소들과 더불어 디자인 컨셉(design concept)의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 디자인 보호범위는 디자인 결과물과 더불어 공간의 분위기와 서비스 방식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디자인의 요소 하나만으로는 다른 공간에 사용되었을 때 모방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디자인 과정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컨셉(concept)의 보호가 필요하다.

셋째, 등록된 사례를 보면, 같은 매장을 내부와 외부 파사드를 나누어 등록하고 있다. 하나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결과물이라면 공간의 내/외부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출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으로서의 디자인이 보호가능성은 더 낮아지면서 출원과정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더하므로 이용률을 낮추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 디자인 부분도 기술특허의 부분과 마찬가지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디자인도 그 창의성 및 신규성에 난이도가 있으며, 고도로 창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여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특허를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운용의 탄력성이 필요하다.

디자인 보호법 및 등록을 위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다른 디자인의 특성과는 다른 실내디자인의 특성의 고려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실내 디자인이 보호되기 위하여 실내디자인 결과물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체계의 개정 및 보완 시 기초자료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김관식, 애플사 대 삼성전자 사건에 비추어 본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 한국산업재산권 법학회논문집 제39호, 2012
2. 유호정, 인테리어 디자인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 미국 상표등록 사례를 중심으로-, 디자인 지식저널, vol.29 2014
3. 안선우,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구조와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10
4. 구자광, 상표의 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비전형적인 상표의 보호가능성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2004

5. 박기철, 업체상표의 기능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특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3
6. William F. Gaske, Trade Dress Protection : Inherent Distinctiveness as an Alternative to Secondary Meaning, Fordham Law Review, Vol.57 1989
7. 김한주,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중소기업과 법, 제 4권 2호, 2013
8. Naomi Straus, Trade Dress Protection for Cuisine, UCLA Law review, 2012
9. 인테리어 디자인의 보호체계 및 보호범위 연구, 특허청, 2011
10.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논문접수 : 2014. 04. 22]

[1차 심사 : 2014. 05. 23]

[2차 심사 : 2014. 06. 02]

[게재확정 : 2014. 06. 13]